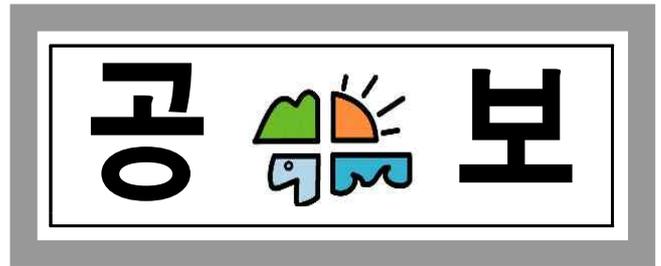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340호 2021년 8월 6일(금)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…… 2

##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8월 4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저소득주민장학금 용어 및 지원대상을 수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의 실현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 증진의 실현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조)

나.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

특주민장학금의 대상자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30조)

다. 저소득주민장학금의 용어를 수정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30조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8. 2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
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(복지정책팀)
- 연락처 : 033-639-2312 (FAX 033-639-2380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#### 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(☎ 033-639-231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”을 “저소득주민장학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7.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

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 등”을 “저소득주민장학금의 지급 등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밖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”을 “밖에 저소득주민으로”, “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·학장·총장”을 “대학생으로 학장 또는 총장 또는 관할동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관으로부터장학금”을 “기관으로부터 장학금”으로, “받을”을 “받는 경우, 그 차액을 지급 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)</p> <p>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국민기초생활 보장,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여성복지, 보훈복지, 아동청소년복지, <u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</u>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이 기금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존속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저소득주민장학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기금의 구분) 시장은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<u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</u></p>	<p>제5조(기금의 구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</u></p>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~ ⑥ (생 략)</p> <p>⑦ <u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</u>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장</u></p>

로 사용한다.

제5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 
지급 등

제30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제6  
조제7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  
상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 
법」에 따른 수급자, 그 밖의  
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  
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 
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  
생으로 학교장·학장·총장이  
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·  
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다른 기  
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  
조를 받을 수 있다.

학금으로 사용한다.

제5장 저소득주민장학금의  
지급 등

제30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밖에 저소득주민으  
로 -----  
----- 대학생  
으로 학장 또는 총장 또는 관할  
동장-----  
-.

② -----  
----- 기관으로  
부터 장학금 ----- 받는  
경우, 그 차액을 지급 할 -----  
-----.